

제 호

농업기계처리명령서

소유자 (점유자)	상호명 또는 농업인 성명			
	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	(전화번호:)		
농업 기계	제조번호			
	기종명		형식명	
	방치된 장소			
	보관된 장소			
명령사항		년 월 일까지 위 농업기계를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		
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 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주의사항

농업기계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업기계를 강제폐기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